사 전 자 산 배 분 기 준

제 정 2007. 8. 17
전면개정 2009. 2. 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자산)
①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회사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리나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펀드"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운용담당자"라 함은 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자산배분의 원칙)

① 회사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펀드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투자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 또는 다수의 펀드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펀드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펀드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⑤ 실제 취득·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미리 정한 펀드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담당자가 펀드별 배분 우선순위 또는 비율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 또는 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사전자산배분정정승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운용담당자의 동의와 운용담당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매매별과를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규, 집합투자규약, 운용지침, 운용계획서, 마케팅자료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모든 운용제한사항의 위반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2. 매매체결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3. 결제자금 부족, 환매자금 부족 등 이 항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6조(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매매구분, 대상종목, 주문금액,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사전자산배분명

세서 및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본부장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매담당본부장은 각 운용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용당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매매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⑤ 운용담당자는 제5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체결된 자산배분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주문시간, 주문번호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주문번호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상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주문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협회가 정하는 채권종류별,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매주문서상의 주문가격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 또는 매매가격의 범위를 정하거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 만을 기재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매매주문의 실행)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배분명세서의 작성)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산배분명세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편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1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 금지)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4.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제12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2007.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